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퇴직금 사건

[판결요지]

금융기관인 법인으로부터 배당이의 소송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어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임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더라도 승소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는 인정될 수 없으나, 위 소송에 관한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비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손해는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9260 손해배상(기)
원 고 원고
대구 수성구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피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12. 7. 27.
판 결 선 고 2012.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2.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89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1 소유이던 경북 칠곡군 대 449.4m²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403,000,000원)로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0. 5. 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0,766,918원 중 28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13명에게 1, 2순위로 배당하였고,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5,766,91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아래 표와 같은 임차인 10인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채권금액	배당액		채권금액	배당액
임차인1	25,000,000	12,000,000	임차인6	30,000,000	30,000,000
임차인2	26,000,000	26,000,000	임차인7	20,000,000	20,000,000
임차인3	20,000,000	20,000,000	임차인8	24,000,000	24,000,000
임차인4	25,000,000	25,000,000	임차인9	50,000,000	50,000,000
임차인5	15,000,000	15,000,000	임차인10	40,000,000	40,000,000
			합계		262,000,000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 임계약을 체결한 뒤 수입료와 인지대, 송달료 합계 3,898,6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0. 5. 10. 위 임차인 10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장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4879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출한 후 2010. 6. 24. 위 임차인 중 임차인 2, 4, 6, 8, 9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라.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1회 변론기일(2010. 7. 20. 11:30)을 지정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14.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위 신청을 불허하였음에도 피고는 2010. 7. 20.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위 소송은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7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구두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를 위한 진술을 하고 증거방법을 제출하는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그 대책에 대하여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 947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당시 원고가 수입료, 인지대 등으로 지출한 적극적 손해 3,898,600원 및 이 사건 소송의 승소시 얻을 수 있었던 임차인 5인의 배당금액인 소극적 손해 107,000,000원 합계 110,898,600원의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인 98,898,600원과 위자료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법인 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하였거나 소송결과가 실제보다 유리하게 끝났을 것이 인정된다면,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위임인이 지출한 비용(다만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이나 위임인이 당해 소송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소송에서 만일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였다면 원고가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을 2 내지 6호증,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임차인1은 2006년경 A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인 소외인2의 중개로 소외인1의 며느리 소외인 3과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11. 위 A동 103호에 자녀 1인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임차인3은 2006. 2. 7. B부동산의 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2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8.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06. 3.경부터 2008. 3.경까지 소

외인1 등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위 주소에서 세금, 통신요금 등의 고지서와 카드명세서를 수령한 사실, ③ 임차인5는 2006. 6. 24.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인 소외인4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2007. 6.경부터 2010. 4.경까지 위 A동 205호의 가스요금을 납부한 사실, ④ 임차인7은 2006. 4. 27. B부동산의 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3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 ⑤ 소외인10은 2006. 5. 17. B부동산의 중개인 소외인5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차보증금 40,000,000원에 가까운 39,7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 ⑥ 이 사건 소송의 피고들인 임차인 1, 3, 5, 7, 10의 각 주소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인들 또는 그 가족이 위 주소지에서 소장부분 등의 소송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은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된 후 소외인1, 3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 중 임차인1의 임차보증금이 실제로는 25,000,000원임에도 10,000,000원으로, 임차인3의 임차보증금이 20,000,000원임에도 3,000,000원으로, 임차인5의 임차보증금이 15,000,000원임에도 3,000,000원으로, 임차인7의 임차보증금이 20,000,000원임에도 5,000,000원으로, 임차인10의 임차보증금이 40,000,000원임에도 10,000,000원으로 각 기재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소외인1, 3을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실, ⑧ 수사결과 소외인1의 아들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소외인1의 아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10명에 대하여 배당된 금액인 262,000,000원의 배상명령을 신

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임차인1, 3, 5, 7, 10을 가장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고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그 외의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한 의뢰인에게 초래된 비재산상 손해가 의뢰인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814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의 비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소송의 제소 경위, 피고의 소송 수행의 내용과 과실의 정도,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액수, 이 사건 소송 종결 후의 사건처리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1.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남효정

 판사 문중흠